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26
----------	--------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정비(안 제1조~제2조)

다.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3조~제4조)

라. 출산축하금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제9조)

마. 가사서비스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13조)

- 가사와 양육부담이 큰 “만8세 이하 세 자녀 이상 양육중인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교육 및 홍보, 표창, 중복지원 금지 신설(안 제14조~제17조)

-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절차 근거마련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1. 10. 14. ~ 11. 3.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5) 제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1.1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란 양육이나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 등의 분야에 인적·물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의 지급
2.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4. 가사서비스 제공·홍보
5.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이하 “다자녀 가구”라 한다)의 지원
6.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 법령·제도의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출산축하금 신청) ①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는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통합처리 신청서를 동장 또는 민원여권과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생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축하금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출산축하금 지급대상) 제5조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생아의 부, 모 또는 실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할 것
2.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3. 출산축하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제7조(출산축하금 지급기준) ①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첫째 자녀: 10만원
2. 둘째 자녀: 50만원
3. 셋째 자녀: 100만원
4. 넷째 자녀: 300만원
5.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

②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③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의 부모가 각 호의 기준 중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1. 신생아의 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50만원
3. 신생아의 부가 중증장애인 외의 등록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제8조(출산축하금 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장애인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출산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출산축하금 대장 등 비치)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자 명부를,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가사서비스의 신청)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가사서비스의 지원대상) 제10조에 따라 가사서비스 지원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만8세 이하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을 것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3. 가사서비스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제12조(가사서비스의 지원) ① 구청장은 1일 4시간, 주 1회, 월 최대 4회까

지 가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가사서비스는 청소 및 세탁 분야에 한정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출산 친화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구청장은 시행계획 및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이나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 또는 가사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출산축하금 또는 가사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때에는 출산축하금 등 지급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출산축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출산축하금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한 출산축하금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제 호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보 호 자	부		생년월일	년 월 일
			등록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모		생년월일	년 월 일
			등록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신 생 아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계좌번호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_____)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관련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장애인 증빙서류, 계좌번호,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이에 준하는 문서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예금통장 사본 1부 2.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 신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 사항]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확인]			
신 청 인	성 명		신생아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주 소		
확인사항	○ 신생아 성명: _____ ○ 신생아 생년월일: ____년__월__일 ○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사항: ____년__월__일 ~ ____년__월__일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장애인사항: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자 명부

연번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신생아		출생신고일	신청서접수일	구청송부일	비고
	성명	생년월일	신생아와 관계	부 또는 모 등록장애여부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출산축하금 지급 대장

연번	신 청 인(부모 또는 보호자)			신 생 아		접수일	출산축하금 지급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입금계좌번호	금 액	일 자	

세 자녀 이상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마포구 전입일자	
서비스 희망요일	※ 평일만 가능 1순위 ()요일 2순위 ()요일 3순위 ()요일				
서비스 희망시간	<input type="checkbox"/> 오전 (9시~13시) <input type="checkbox"/> 오후 (14시~18시) <input type="checkbox"/> 시간 조정 가능			반려동물	<input type="checkbox"/> 유 (마리) <input type="checkbox"/> 무
주거 및 가족 유형	주거현황 (필수 기재)	평수 평 / 방 개수 개		가족 수	총 명 자녀1: 만 세 자녀2: 만 세 자녀3: 만 세 기타: ※ 자녀4 이상은 기타에 작성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빌라) <input type="checkbox"/> 시설			
※ 해당 사항 표시 <input type="checkbox"/> 장애가 있는 가족 (본인 포함) <input type="checkbox"/> 병환이 있는 가족 (본인 포함)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input type="checkbox"/> 만65세 이상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input type="checkbox"/>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증대 <input type="checkbox"/> 여가시간 확보 <input type="checkbox"/>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input type="checkbox"/> 스트레스 감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				
건강보험료 (가족 합산)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지역 <input type="checkbox"/> 혼합 총 원				
자기부담금 기타	이용자는 가사서비스 1회당 10% 자기부담금이 발생함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서비스 지원 업무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거 및 가족 유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 자녀 이상 가정 가사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 . . . 신 청 자 : (서명)					
구비서류 : 가입자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아래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결정내용	사업대상 자녀수	마포구 거주기간	소득기준	우선순위	
적합 / 부적합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조례 제11조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가사서비스지원

나. 비용추계기간: 2022. 1. ~ 2026. 12.(6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차 별 (5개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소요예산	110,300	132,000	142,000	152,000	162,000	698,300

4.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

5. 덧붙이는 의견

-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이애련(☎ 3153-8925)